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2. 6 선고 2021가단120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홍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영기

피고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대섭

변론 종결2022. 10. 18.

판결 선고2022. 12. 6.

주 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0.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26,146,9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6,146,9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1가합5987호 판결로 확정된 "1,237,679,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판결금 채권(2011. 11. 23. 확정,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C는 2020. 4. 20. 자녀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당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20. 4. 22. 접수 제2078호로 위 각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후 C의 모이자 피고들의 조모인 D이 E조합에 2021. 5. 15. 원리금 35,114,868원을 변제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5. 5. 15. 접수 제2561호로 등기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6. 6. 24. 접수 제3265호로 등기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직 남아 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4. 20. 및 감정평가일인 2022. 6. 23. 기준 시가는 다음 표와 같다.

- 2020.04.20. 기준시점 : 일억일천일백사십칠만이천사백원(₩111,472,400.-)

1	강원도 양구군 G	리 H	대	계획관리 지역	659.6	659.6	169,000	111,472,400	
합계	111,472,400								

- 2022.06.23. 기준시점 : 일억일천칠백사십만팔천팔백원(₩117,408,800.-)

1	강원도 양구군 G	리 H	대	계획관리 지역	659.6	659.6	178,000	117,408,800	
합계	117,408,8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C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던 사실이 있었던바, 이처럼 금융기관으로서 C에 대한 채권추심에 힘썼던 원고로서는 C 소유의 다른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후 원고의 재산처분내역을 추적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및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 즉 원고가 C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C에 대한 채권추심에 힘썼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및 C 소유의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C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2021. 7. 8.자 기준 잔존 금액은 1,940,571,593원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2) C의 적극재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그 무렵의 시가는 약 111,472,400원으로 평가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C 소유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5.자로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것은 C의 모이자 피고들의 조모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D으로 하되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대출금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자력이 생길 때까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를 C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이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C가 아니라 D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가 2015. 5. 15.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그 무렵 C 본인이 채무자로서 E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및 그 대출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사실(이는 피고들도 자인하고 있는 사실이다),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으로부터 6년이 지난 2021년경에야 E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였는데, 그 변제 시점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D 본인 명의로 이전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C의 소극재산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C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 앞서 본 기초사실 다.항 및 라.항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 액수만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4) 소결 결국 이와 같은 상황에서 C가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지분씩 증여한 것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피고들의 선의 여부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C가 아니라 조모인 D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들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한 점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을 선의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하여 줄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원상회복의 방법 및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미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자 E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①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액과, ②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취소한 범위에 해당하는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위 ①의 판결금 채권액이 위 ②의 금액, 즉 52,293,932원[=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2022. 6. 23. 기준 가액 117,408,800원 - E조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D이 2015. 5. 15. 변제한 원리금 전액) 35,114,868원 - 주식회사 F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현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을 현저히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결국 위 ②의 금액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들과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26,146,966원(위 ②의 금액인 52,293,932원의 반액임)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들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각
26,146,9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기홍

별지